##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70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 : 김위상 • 박충권 • 임이자

고동진 · 김형동 · 김성원

구자근 · 김승수 · 주호영

우재준 · 서범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법률 제 호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3제1항"을 "제20조의3제1항(제7조의10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죄를 지은 자(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20조의3제1항</u> 에 따른 자격	3. <u>제20조의3제1항(제7조의10제</u>
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위반한 <u>사람</u> 및 같은 조 제2	<u>함한다)</u>
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u>자</u>
3의2. ~ 5. (생 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2항제3호의 죄를 지은 자
	(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
	되는 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
	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
	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